

SALE OF FOOD ACT 1973

No. S 425

식품판매법 섹션 56(1)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규정을 개정함.

개정내용

제13차 일정의 개정

5. 식품 규정 제13조의 "대두 기반 음료" 항목에 "sucralose" 열 제목 아래에 "400"을 삽입합니다

번호	첨가물	허가된 제품	최대 허용량	비고
6	sucralose	콩을 기반으로 한 음료	400 ppm	감미료로 사용할 경우

시행일: 2024. 5. 20